

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

제정 1996. 7. 6 조례 제 55호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698호
2009. 4. 24 조례 제100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)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,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당해 읍·면·동의 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3조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
2. 한정치산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

제4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.

1.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
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, 장려 및 지원
3.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
4.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
5.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·선도·지도 및 정화활동

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

6.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·지원활동 등

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5조(지도위원의 수) 지도위원의 수는 읍·면·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·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위치,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24>

제6조(증표교부)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7조(필요경비 등 지원)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)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청, 읍·면·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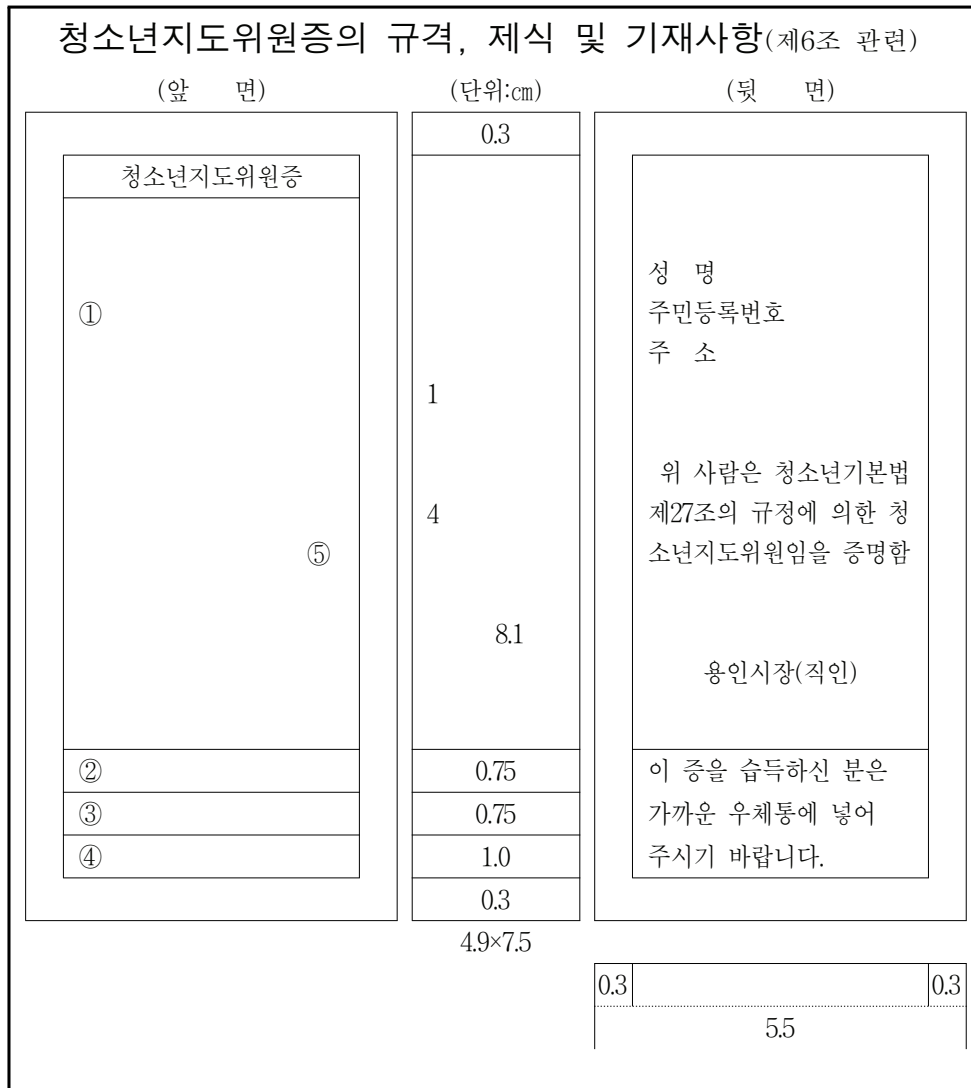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98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100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05. 10. 5>



(비 고)

1.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/m²으로 한다.
2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① 사 진	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
③ 소속기관명	④ 유효기간
	⑤ 철인(발급기관의 철인)